

#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43
----------	------

제출년월일 : 2015.11.10.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관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지역사회 보장 환경 변화
- 동법의 원활한 시행(‘15.7.1.)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및 기능 확대 등 변경 사항을 반영

## □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용어 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실무분과 구성 규정 신설(안 제5조)

###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구성 규정 신설(안 제6조)

- 협의체 기능 추가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라.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19. ~ 11. 08. (20일간)

## □ 개정조례안 : 불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 붙임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보건복지부):붙임5
-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계획 방침결정문:붙임6

<붙임1>

##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견의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전의
3.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전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협의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계장, 실무분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2.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개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맡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 ⑥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관·단체·법인·시설의 임원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복지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이 창 우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기획담당 노 찬 규
	담당자 성명·전화	김 진 의 (행정 2865)

<붙임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명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능)</b> ①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li> <li>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지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li>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li> </ol> <p>② 대표협의체는 안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u>제명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b>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건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li> <li>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li> <li>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구성)</b>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5.6&gt;</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p> <p>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p> <p>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p> <p>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되되, 사회복지업무담당(팀장), 보건의료업무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p> <p>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p> <p>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p> <p>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b>제3조(구성 등)</b>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되, 시장·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li> <li>3.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li> <li>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li> </ol> <p>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p> <p>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위원회명단 공개)</b>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안산시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4조(실무협의체)</b>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p> <p>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협의체의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li> <li>2.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견의</li> <li>3.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전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li> <li>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li> <li>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li> <li>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협의를 요구한 사항</li> </ol> <p>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계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li> <li>2.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li> <li>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5.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li> </ol> <p>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b>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6조(위원의 임기)</b>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b>제5조(실무분과)</b>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b>제6조(동 협의체)</b>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p> <p>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li> <li>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li> <li>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li> <li>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li> <li>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li> <li>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li> <li>6.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막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li> </ul> <p>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p> <p>⑥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위원의 해촉)</b>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개정 2009.5.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li> <li>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3. 위원 <u>스스로</u>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b>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b>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8조(간사 및 직원)</b>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p> <p>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가를 공개채용 한다.</p>	<p><b>제8조(위원의 임기)</b>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b>제9조(회의 등)</b> ① 각 협의체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회는 대표협의체는 년2회, 실무협의체는 년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자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b>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u>스스로</u>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li> <li>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3. 기관·단체·법인·시설의 임원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li> <li>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p><b>제10조(회의록)</b>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li> <li>3. 심의사항</li> <li>4. 심의결과</li> <li>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li> </ol>	<p><b>제10조(사무국)</b>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p> <p>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li> <li>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u>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u></li> </ol> <p>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b>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b>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1조(회의 등)</b>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li> <li>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li> <li>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li> <li>4.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li> </ol> <p>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p>
<p><b>제12조(의견의 청취)</b> 각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12조(회의록)</b>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li> <li>3. 심의사항</li> <li>4. 심의결과</li> <li>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13조(주요사업)</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제2조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li> <li>2. 조사 및 연구</li> <li>3. 교육 및 홍보</li> <li>4.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li> <li>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b>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b>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4조(수당 및 여비)</b>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4조(의견의 청취)</b>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b>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b>제15조(회의 수당)</b> 각 협의체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p>
<p><b>제16조(운영규칙)</b>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16조(지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li> <li>② 시장은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li> <li>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li> <li>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ol> <p><b>제17조(시행규칙)</b>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743
------------	------

제안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 제안이유**

- 동 협의체와 시 협의체의 연계를 위해 실무분과에 동 협의체 분과를 신설하는데 있어 25개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분과 위원명수 수정이 필요함

## **□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의 실무분과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수정함

#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협력 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u>2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협력 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u>3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